

정정신고(보고)

2018년 6월 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삼성코리아대표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4. 17

3. 정정 내용 :

-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자투자신탁 삭제에 따른 모자형 구조 정정 등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작성기준일 : 2018.2.2	작성기준일 : 2018.5.28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p>가. ~나. (생략) 다. 모자형 구조</p> <p style="text-align: center;">모자구조(코대자)_변경전</p>	<p>가. ~나. (생략) 다. 모자형 구조</p> <p style="text-align: center;">모자구조(코대자)_변경후</p>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	-	업데이트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____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____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____(이하 생략)	라. 손해배상책임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____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____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____(이하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9)(생략) (추가) 10)(생략)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9)(생략)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생략)